

2005. 6.

# 條例案審查報告書

-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
-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용자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總務委員會

# 조례안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조례안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	2005. 6. 7	2005. 6. 9	2005. 6.27	2005. 6.27	주민자치과장
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"	"	"	"	사회복지과장

## 2. 제안설명요지

### 가 .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

#### 1) 제안이유

-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함

#### 2) 주요내용

- 자원봉사센터 조직구성(안 제7조)
  - 명예직 센터소장, 유급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음
  - 임용 및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
- 운영위원회 설치(안 제10조)
  -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

- 보조금의 지원(안 제11조)
  -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
- 마일리지제 운영(안 제23조)
  -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를 무료 또는 감면해 주는 등 인센티브 부여

## 나 .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) 제안이유

- 그동안 시중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, 본 조례에 의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융자되는 융자금의 이자를 조정하지 않아 대상자들이 융자신청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금리를 인하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

### 2) 주요내용

- 융자금 이자 : 5% ⇒ 2%로 인하
- 연 체 이 자 : 15% ⇒ 10%로 인하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### 가 .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

-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8일 제79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시 당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충주시 자원봉사발전위원회규정 조치검토를 위해 부결한바 있음
- 금번 제출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
  - 2003년에 제출되었던 조례안과 비교할 때 조례안의 기본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하겠으며 당시 부결사유가 되었던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명칭을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로 변경하였으나 위원의 구성이나 위원회의 기능 등은 거의 같은 내용임

- 지금까지 민간조직으로 운영해오던 자원봉사 센터를 본 조례안(제5조)에서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제(제15조)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안과 민간위탁시를 고려하여 제정되었다 하겠으나 자원봉사센터의 성격상 민간위탁을 전제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
- 조례안 제12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은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운영 할 경우에 대비한 내용으로 사료되나 전반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
- 제23조(마일리지제 운영)은 자원봉사자에게,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, 사적지, 공영주차장, 자연휴양림 등 공공시설 이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, 시설이용료, 입장료, 주차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자원봉사자를 비롯하여 새마을지도자, 바르게살기위원, 주민자치위원 등 각종 직능 및 봉사단체 회원 개개인의 봉사활동 실적으로 마일리지 부여를 위하여 관리 할 경우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
- 본 조례 제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상위법은 없으며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2(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)을 근거로 한다하겠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시,군이 다수 있음

## 나 .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본 조례는 1996년 7월 29일 제정되어 2002년 1월까지 4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, 현행 조례상 이자율은 1996년 조례제정 당시 책정된 것임
- 본 조례의 목적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가구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2년 거치 3년 상환의 단기자금으로 융자되는 것으로
- 최근 수년간 시중은행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대폭 인하된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에서 정한 이자율도 하향조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

## 4. 질의 · 답변 요지

### 가 .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

▶질의 : 조례 제정 후 달라지는 내용은?

○답변 : 현 3명인데 일이 많아 늘어나 1명정도 증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

▶질의 : 조례 제정 목적이 직영을 하려는 것인지, 위탁을 하려는 것인지?

○답변 : 2가지 다 고려하였음.

### 나 .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“ 없음 ”

## 5. 심사결과

### 가 .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: 수정의결

- 조례 내용이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므로 조례의 제명을 『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로 수정, 제12조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규정은 『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』 제 규정에 따라야 할 사항이므로 삭제 함.

### 나 .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수정의결

- 타 기금의 융자조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리2%를 1.5%로 수정

## 6. 붙 임

### 가 .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

### 나 .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 끝.

## 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명 “충주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”를 “충주시자원봉사센터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내지 제24조를 안 제12조 내지 제23조로 한다.

### 〈수정안 대비표〉

제 정 안	수 정 안
<p><u>제12조(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) ①센터는 제11조 규정의 예산지원을 위하여 사업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계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정산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센터는 수입·지출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전하여야 한다.</u></p>	<p>〈삭 제〉</p>
<p><u>제13조-제24조 (생략)</u></p>	<p><u>제12조-제23조 (제정안과 같음)</u></p>

##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3항중 “연2퍼센트”를 “연1.5퍼센트”로 한다.

### 〈수정안 대비표〉

개정안	수정안
제4조(융자금액 등) ①~②(생략)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<u>연2퍼센트</u> 로 하되,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. 다만,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연10퍼센트에 의한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.	제4조(융자금액 등) ①~②(개정안과 같음) ③..... .....연1.5퍼센트..... ..... ..... ..... .....